

19.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담보규정중개정규정(안)

주요 골자

- 가. 종전 주택공제조합 시절 부지매입보증을 취급하면서 당해 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당해 보증의 해지여부에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2조제1항)
- 나. 위의 경우 당해 피보증인과 공동으로 입주금수납계좌를 개설하여 2차, 중도금수납시까지 당해 부지매입보증을 해지토록 함(안 부칙 제2조제2항)

담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 年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담보물해지등에 관한 특례) ①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규정시행세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(당해 부지매입보증 대상부지에 한한다)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의 해지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양보증

을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입주금을 피보증인과 공동으로 입주금수납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금(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한다)으로 당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.

1. 계약금 납부마감일 익일에 당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금액(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는 날의 잔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40퍼센트
2.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1차 및 2차 중도금 납부일 익일에 각각 당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금액의 30퍼센트

주택회보